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시스템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정(안 제2조의5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5(건강검진) ① ~ ③ (생략)	제2조의5(건강검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연락처	044-203-6694